

# 2024년 4월에 구제역 백신을 일제히 접종합시다



접종 대상	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
접종 시기	2024년 4월 1일 ~ 4월 14일까지 * 단, 공수의 등이 접종을 지원하는 농가는 4월 28일까지
접종 백신	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(O+A형) · 소 소규모농가(50두 미만)와 염소 농가는 시·군에서 일괄 공급하며, 소 전업농가(50두 이상)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 * 소 소규모와 염소 농가는 보조 100%, 소 전업농가는 보조 50%
접종 방법	· 소규모농가(소 5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) : 수의사 등을 통한 접종 지원 · 전업농가(소 50두 이상, 염소 300두 이상) : 자가 접종

## 접종 전·중·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을 예방합시다.



- 접종 전** 백신 접종반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, 마스크, 방역덧신 및 장갑 등을 착용하고 1농장/1회 사용원칙 준수 철저
- 접종 중** 백신 접종요령 준수, 접종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
- 접종 후** 접종인력·차량 및 접종에 사용한 물품 세척·소독 철저

### 접종 등록 (기록)

- (소) 자가 접종 한 경우 신속히 관할 지자체 또는 지역축협에 접종 신고
- (염소) 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 상황 기록(3년간 보관)

### 사후 관리

-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양성을 모니터링 검사 실시
-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(소 80%, 염소 60%)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부과, 재접종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 조치

#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합니다



##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.

-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농가는 **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합니다.
-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발생농장은 **보상금 전액을 감액**합니다.
  - 신고 지연,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준수사항 불이행 시에도 보상금이 감액됩니다.



## 가축을 거래할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.

- (돼지·염소)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, (소·종돈)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
  -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, 자돈, 어린 염소를 거래하려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, 모돈, 어미 염소의 '이전 예방접종일'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합니다.



## 농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소독 하고, 외부인·출입차량 통제·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.

- 일반인은 국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,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가축 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.
  -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철저
  -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가축전염병 해외 발생 현황 등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(<https://www.qia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수칙, 예방접종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.

##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합니다

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·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가축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588-9060(농림축산검역본부)

1588-4060(지방자치단체)